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3
----------	------

발의연월일 : 2024. 9. 26.

발 의 자 : 한지아 · 김형동 · 김예지
조지연 · 강승규 · 김승수
정성국 · 김 건 · 조은희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처 등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를 “대부, 사용·수익”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 모집절차, 사용처 등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u>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u>대부</u>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 ----- ----- -----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u>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② -----

----대부, 사용·수익-----

-----.

제16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
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

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
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